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중전에는 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구역에 둘 이상의 도로가 접하는 경우에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,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인 하나의 도로가 접하는 경우에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 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 . . . ~ . 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호의 도로 및 예정도로를 말한다. 다만,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이러한 도로 또는 예정도로가 둘 이상 접한 경우로 한정한다”를 “다음 각 호의 도로 및 예정도로를 말하며,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”로 한다.

제2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항에 따른 도로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제2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사업시행구역에 접하는 도로가 하나인 경우: 도로의 너비는 20미터 이상일 것
2. 사업시행구역에 접하는 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: 도로의 너비가 각각 4미터 이상이고, 둘 이상의 도로 중 하나는 6미터[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4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(이하

“시·도조례”라 한다)로 넓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너비로 한다] 이상
일 것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가로구역의 범위 등) ①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항제4호가목3)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”란 <u>다음 각 호의 도로 및 예정도로를 말한다. 다만,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이러한 도로 또는 예정도로가 둘 이상 접한 경우로 한정한다.</u> 1. ~ 3. (생략) ② <u>제1항에 따른 도로의 너비는 각각 4미터 이상이어야 하며, 둘 이상의 도로 중 하나는 6미터[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4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(이하 “시·도조례”라 한다)로 넓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너비로 한다]</u> 이상이어야 한다.	제2조(가로구역의 범위 등) ①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다음 각 호의 도로 및 예정도로를 말하며,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.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② <u>제1항에 따른 도로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</u>

<신 설>	1. <u>사업시행구역에 접하는 도로가 하나인 경우: 도로의 너비가 20미터 이상일 것</u>
<신 설>	2. <u>사업시행구역에 접하는 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: 도로의 너비가 각각 4미터 이상이고, 둘 이상의 도로 중 하나는 6미터 [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4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(이하 “시·도조례”라 한다)로 넓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너비로 한다] 이상일 것</u>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